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69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안호영 · 윤준병 · 신정훈
김주영 · 박 정 · 이춘석
한병도 · 임미애 · 전진숙
朴芝源 · 문금주 · 박희승
소병훈 · 엄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천 식생의 제거활동과 채취물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7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의 채취

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다.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3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으로서 그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u><신 설></u> 6. (생 략) ② ~ ⑨ (생 략)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죽목 · 갈대 · 목초 또는 수초 등의 채취</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 · 제3호부터 <u>제6호</u> 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 ----- ----- ----- -----. ----- ----- <u>제7호</u>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다.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

	<u>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으로서 그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u>
--	---